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계획

소방청
화재예방과

CONTENTS

I. 제천 및 밀양화재 개요

II.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계획

III.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

PART I.

제천 및 밀양화재 개요

- 일 시 : 2017. 12. 21(목). 15:53 최초신고 접수 * 22:19분 완진
- 발화장소 : 1층 주차장 천장, 15:48분경 천장에서 불꽃과 연기 발생 (CCTV 분석결과)
 - ☞ 충북 제천시 하소동 71-7 노블휘트니스 스파 * 중앙119안전센터·본서 3.1km (7분 소요)

건물 현황

- 구조 :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필로티 구조)
지상 9층 / 지하 1층
- 연면적 : 3,813.50㎡, 바닥면적 : 639.12㎡, 피난계단 2개소
- 건축 사용승인일 : 2011.7.15.
- 건물주 : 이○○ (남53세, 1964년 생)
* '15.9.8.청주지법 경매결정 → '17.8.1. 경매낙찰로 소유권 취득

층별 용도

- 지상 1층 : 필로티, 로비, 주차장
- 지상 2~3층 : 목욕장 및 찜질방
- 지상 4~7층 : 헬스클럽
- 지상 8~9층 : 음식점
- 지하 1층 : 골프연습장, 전기실, 기계실

- 원 인 : 1층 주차장 천장배관에 설치한 동결방지 작업 중 발화 추정

보온재에 착화된 다음 주차차량으로 확대

* (최초신고) 양○○(여, 70년생), 화재건물 1층 사무실 여직원

- 피해현황 : **사망 29명, 부상 40명, 재산피해 : 20억 3,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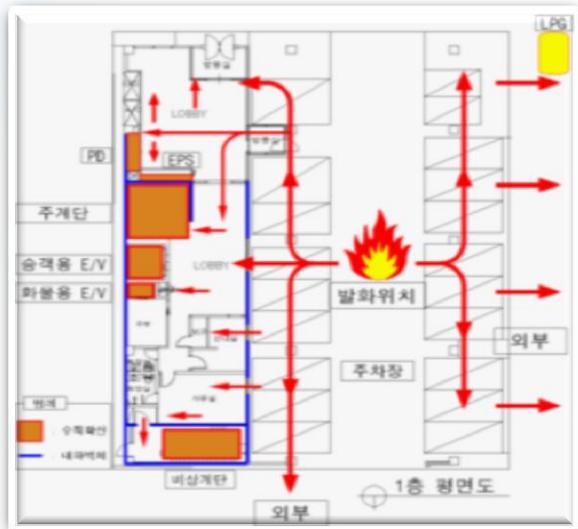
* (건물주 보험) 사망 1인 1억원, 부상 1인 2천만원,

대물 5억원, 건물재물 40억 정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 동원 소방력 : **인원 564명, 헬기 3대 등 장비 82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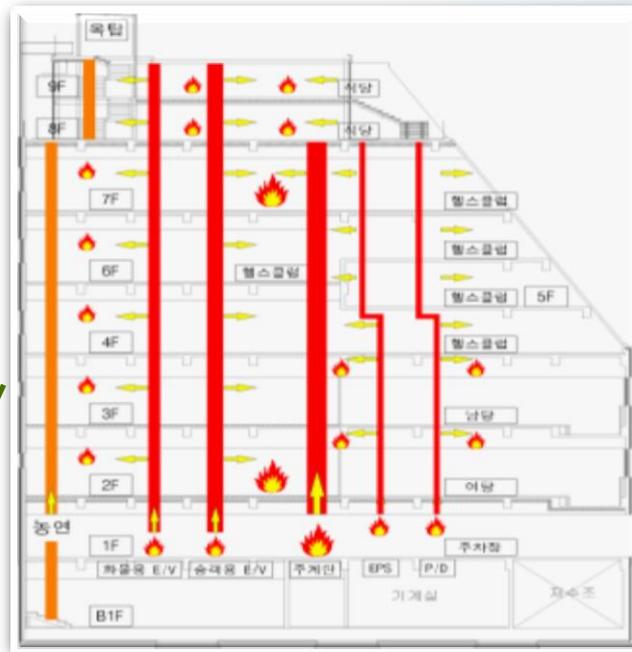
* 중앙119구조본부 63명 9대, 충북 485명 66대, 강원 16명 7대

화재 진행과정



1층 수평확산

건물 수직확산



- **착화(15:48) : 주차장 중앙 천장배관 동결작업 중 스티로폼에 착화**
 ※ 기상 : 온도 2.1°C, 습도 36%, 서북풍(2.3㎧ 건물 전면→후면)
- **초기연소(15:53) : 천장 보온재가 불완전 연소(훈소)되던 중 순식간에 1층 전체로 확산, 스티로폼 연소 용융물이 주차된 차량에 떨어져 연소 확대**
 ※ 관리직원 2명이 5분간 자체진화 시도하였으나 실패(소화기, CO₂설비 사용)
- **초기진화(19:30) / 완전진화(22:19) : 건물 화재진압 완료**

확대 경로

- (수평 확산) 주차장 → 로비공간 → 주계단 →  천장 미구획 구간 통해 확산
- (수직 확산)
 - ① 수직통로 : EPS 및 PD(7층까지 연결), 주계단, 화물용 및 승객용 E/V실
 - ② 폐쇄형 옥상구조 및 배연창 미작동 때문에 농연이 상층부터 채우고 다시 하강
 - ③ 외벽 드라이비트 통해 상층부로 급속히 연소 확대

필로티 구조의 취약점

- 주출입문 방화문 부재, 천장 방화구획 미설정 등 실내로의 화재확산 차단 불가
- 현재, 필로티 부분과 출입문 방화구획 등에 대한 기준 미비



EPS상부 방화 마감처리 불량



화물용 E/V 전면 소실



필로티 주차장과 옥내경계 방화구획 미비

소방시설 작동여부 및 방화관리 실태

- (경보설비) 연기/열 감지로 화재초기부터 경보가 울림 (☞ 대피자 증언)
- (스프링클러) 미작동 ※ 펌프 연료(52ℓ) 및 수원량(39톤) 불변, 1층 알람밸브 폐쇄
- (배연창) 미작동 ※ 수동잠금장치 설치로 작동 불능化
- 당시 1층 호스릴CO2 설비 1대는 사용, 1대는 미사용(안전핀 미개방) 상태
- 화물용 E/V 승강로 방화구획 미설치
- 2층 여자 사우나 비상통로 내 선반설치 및 폐쇄 (비상구 기능 상실)
- 옥상층이 폐쇄되어 열·연기 배출이 불가능한 상태
- 영업개시 후 화재발생 전까지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미실시



화물E/V방화구획 불량



비상구 통로 장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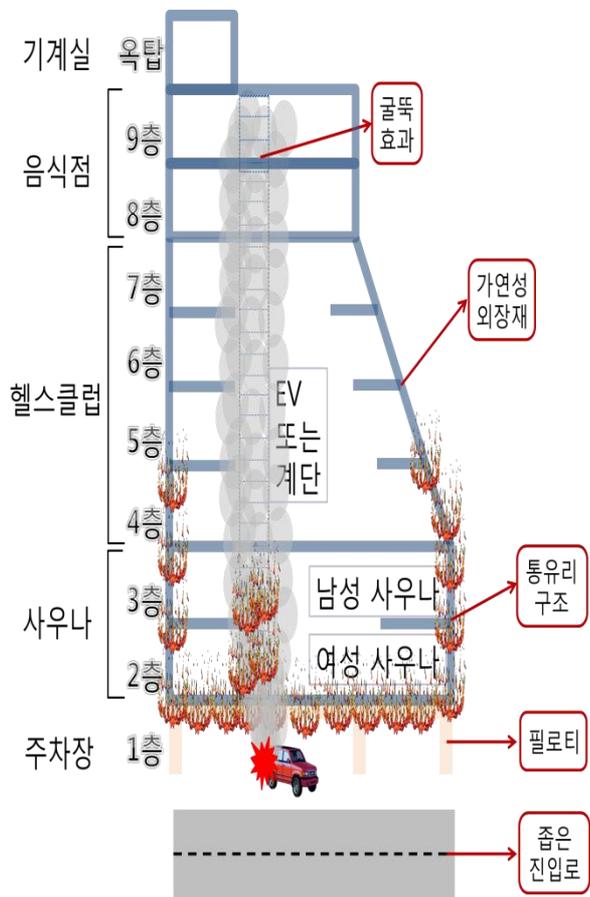


1층 알람밸브 폐쇄



배연창 수동잠금장치

다수 사상자 발생사유



- ① **천장(스티로폼), 외벽(드라이비트)의 급격한 연소 및 확산 (굴뚝효과)**
- ② **필로티 주차장과 옥내 경계, 엘리베이터 승강장 방화구획 기준 미비**
- ③ **EPS, PD 및 화물용승강기 승강로 방화구획 미비**
* 합판으로 구획하고 합판에 타일을 붙인 구조
- ④ **2층 목욕장 비상구 기능 상실(통로에 선반 설치 등)**
- ⑤ **불법 주차차량, 2층 외벽 통유리 구조 등으로 원활한 소방활동 장애**
- ⑥ **최상층부의 열·연기 자연배출 기능상실**
- 폐쇄형 옥상구조로 열·연기가 건물 內 축적
- ⑦ **스프링클러설비 未 작동**
- ⑧ **관계자의 초기대응 미흡 및 안전관리 소홀**

2. 밀양 세종병원 화재

- 일 시 : 2018. 1. 26(금). 07:32 최초신고 접수 * 10:26분 완진
- 발화장소 :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천장
 - ☞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 가곡119안전센터·본서 0.3km (07:35) / 본서(밀양) 1.8km

구 분	세종병원					세종요양병원		
용 도	의료시설 (일반병원)					의료시설 (요양병원)		
소유자 (소방안전관리자)	효성의료재단법인 (김○○, '12.9.19. 선임)					효성의료재단법인 (김○○, '12.9.19. 선임)		
건축물 현황 및 연혁	층 수	5/0층				6/0층		
	연면적	1,489.32㎡				1,285.49㎡		
	바닥면적	394.78㎡				224.69㎡		
		1층	2층	3층	4층	5층	1층	2층 ~ 6층
		응급실	수술·입원실, 간호사실	중환자실	입원실	입원실 주방, 식당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병원(입원실)
		('92.06.22) 사용승인(근생 / 의원) ('92.11.28) 1층~3층 증축 * 1층 5.81㎡, 2층 259.82㎡, 3층 203.60㎡ ('93.04.16) 4층 증축 (87.36㎡) ('05.04.04) 증축 및 용도변경 (의료시설) * 1층 2.18㎡, 2층 2.18㎡, 3층 134.6㎡ 4층 275.69㎡, 5층 209.82㎡, 화장실 3.42㎡ 부설주차장 6대 165㎡,					('96.07.08) 사용승인(숙박시설) ('06.07.20) 증축 및 용도변경(의료시설) * 1층 27.06㎡, 2~5층 층별 16.63㎡, 6층 73.72㎡ ('06.09.08) 창고 19.29㎡ 증축 ('08.06.23) 용도표시 변경(노유자시설) ('08.07.02) 용도표시 변경(의료시설) ('10.10.26) 1층 병원 → 장례식장, 일반음식점(용도변경)	

- 원 인 :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 설치된 전등 배선기구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1층 전소, 상층부로 유독성 연기 확산

* (국과수 발표) 18. 1. 27(토), 28(일) 10:00 국과수 등 기관합동조사

- 피해현황 : 사망 39명, 부상 151명, 재산피해 2억 2천만원

* (보험) 사망 1인 8천만원, 부상 1인 1.5천만원 / 특약부화재 보험 가입

- 동원 소방력 : 인원 336명, 헬기 3대 등 장비 77대

* 중앙119구조본부 69명 17대, 경남 212명 41대, 부산, 울산, 창원, 경북 55명 19대

다수 사상자 발생사유



- ① 가연성물질(침대, 칸막이 합판 등)의 급격한 연소 확산
- ② 입원환자 대부분이 고령과 거동불편 피난약자로 신속한 대피 불가
- ③ 중앙계단 방화구획 미비 및 방화문 유지·관리 미흡
- ④ 자동소화설비에 의한 초기진화 기능 미비(스프링클러설비 비대상)
- ⑤ 입원환자 대비 근무인원이 적어 화재초기 신속대처 미흡(입원환자 83명, 근무자 9명)

PART II.

화재 안전 특별조사 추진 계획

추진배경

❖ (VIP지시)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대통령께서 근본적 개혁방안 마련 지시*

< 지시사항 >

- 청와대 내 「화재안전대책특별TF」구성
- 화재취약시설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
- 점검실명제 도입, 점검결과 공개 추진 등

❖ (재발방지)

- 대형 화재참사 재발방지
- 국가의 적극적인 국민생명보호 정책수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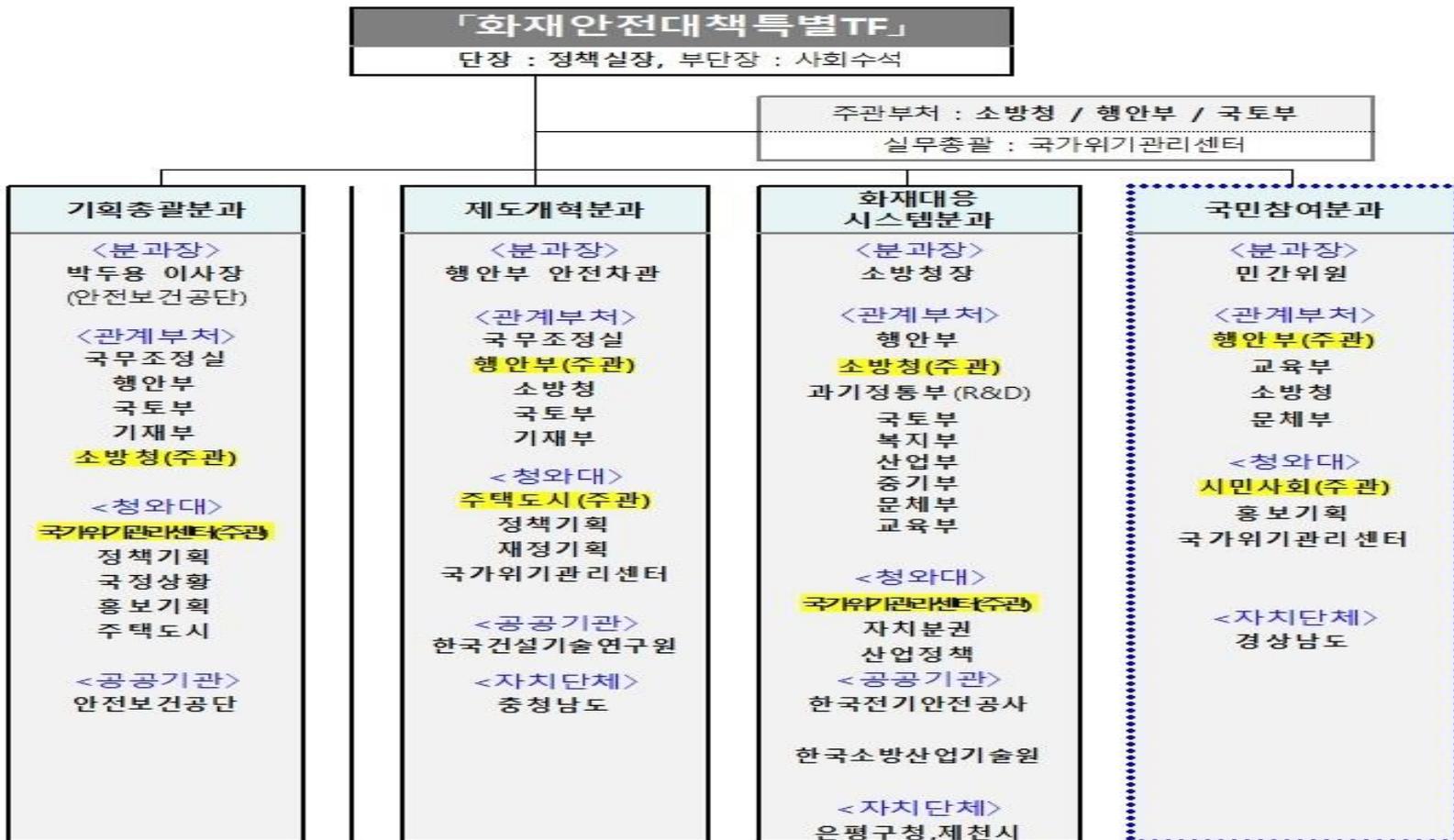
* 화재안전의 획기적인 전기(轉機)를 마련하고,
화재안전 100년 대계(火災安全 100年 大計) 수립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 BH '화재안전대책특별TF' 구성 ('18.2.13. / 청와대, 부처, 지자체, 관계기관 참여)

추진 방향 및 전략

- ❖ **(제도개혁)** 현행 제도를 전면 검토하여 근본적인 개혁과제 도출, 즉시이행, 단기,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 ❖ **(대응시스템 개혁)** 화재감지부터 초기수습까지 대응단계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강력한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시스템 선진화
- ❖ **(화재안전특별조사)** 형식적 점검방식에서 탈피, 새로운 점검 틀에 의한 정밀 조사 실시, 조사결과는 취약시설 개선 및 화재대응력 강화에 활용
 - * 조사는 기술자격보유 청년 및 신중년 일자리와 연계하고, 장비개발 등과 관련된 정책은 안전산업발전 혁신동력화
- ❖ **(국민참여)** 국민의 화재 대처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화재안전 교육·훈련 강화, 국민참여에 의한 안전문화 운동 병행 전개

TF 구성



※ 민간전문가 참여 및 '국민참여분과' 구성은 추후 확정

※ 구성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 비서관실 필요시 실무위원 추가 또는 안건관련시 참여

우리 주변에 만연한 소방안전적폐

추진 목적

- **화재참사 예방**

-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 건물에 대한 긴급점검 및 안전조치

- **건물안전 실태조사**

- 건축·소방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위험요소를 발굴,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대책 추진

- **소방활동 D/B 구축**

- 화재안전 점검결과 분석 및 건물별 화재위험성 평가
⇒ 화재안전정책 수립, 인명구조·화재진압작전 등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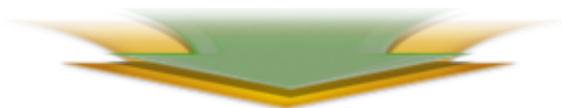
추진 목적

- **안전점검시스템 개선**

-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건축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쫄** 과정에서 점검과 개선활동이 지속되도록 제도 개선

- **대국민 정보공개**

- 건물주의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건축물 안전 강화
- 국민의 안전시설 선택 및 이용권 보장



'화재안전 100년 대계' 수립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안전제도 개선과 화재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국가의 화재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기를 마련

조사 개요

- **기간 : 2018. 7 ~ 2019. 12** ※ '18. 4~6월 : 점검설계 및 사전준비·홍보
- **대상 : 다중이용시설 등 55만 4천개동**(화재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 높은 취약시설)
 - 1단계('18.7~12) : 17만 2천개동 / 2단계('19년) : 38만 2천개동
- **방법 : 소방, 건축, 전기 등 전문가로 조사반 편성**(현장조사)
 - 조사반 : 건물규모별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국민생활 밀접시설 조사시에는 시민 참여(시민조사참여단)
- **조사내용 : 물적, 인적, 환경적 요인 종합조사**
 - 물적요인 (건축, 소방, 전기, 가스시설 등)
 - 인적요인 (이용자 특성, 안전관리이력 등)
 - 환경적요인 (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2018년도 1단계 조사계획

- **대 상 : 17만 2천개동**(다중이용업소 소재 복합건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
 ※ 불특정다수인 또는 재난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화재취약요인이 많은 대상)
- **인 력 : 총 2,755명**(조사 및 상황관리 2,688명, 행정 67명)
- **조사반 : 총 798개반**(조사대상 규모별 3개 유형으로 구분편성)

구 분	A반(5명) (5천㎡이상)	B반(4명) (3천5백~5천㎡)	C반(3명) (3천5백 미만)
조사대상 수	10,450개동	4,951개동	157,142개동
조사반 수	57개	24개	717개

* 1일 평균 조사수량 : A반 1.62개동, B반 1.82개동, C반 1.94개동(조사일수 113일 기준)

- 조사반장은 공무원, 보조인력은 관련 자격소지자 등 청년인력 활용

- **예 산 : 총 442억원** / 국비 159억(예비비), 지방비 283억(재난특교세 등)

화재안전특별조사 인력 세부구성

구분	A반 (57개)	B반 (24개)	C반 (717개)	총 인력(명)	조사내용	비고	
계	5	4	3	2,755			
조사반	소방	1	1	1	817 (조사 798 / 상황 19)	소방분야	【반별 건축물 규모】 - A반: 5천㎡이상 건축물 - B반: 3천5백~5천㎡ - C반: 3천5백㎡미만
	건축	1	1	1	817 (조사 798 / 상황 19)	건축분야	
	전기	1			89	전기분야	
	가스	1	1		73	가스분야	
	조사보조	1	1	1	892 (조사 798 / 상황 19) *10% 예비	전체 조사사항 보조	
행정보조				67			

추진 로드맵

'18. 4 ~ 6월
(특별조사 준비)

- ▶인력채용 추진, 조사장비 구매, DB구축안 설계
- ▶조사단 직무교육, 전문가 그룹 인터뷰, 집중 홍보
- ▶비상키트 구성품 설계 및 구매 완료
- ▶전용 홈페이지 개설 및 자료 제공(Q&A 코너 운영)

'18. 7 ~ 12월
(1단계 조사)

- ▶1단계 특별조사(17만2천개동), 상황관리반 운영
- ▶중간조사 설문조사(조사완료 건물 관계자 대상)
- ▶건축물 화재안전정보통합D/B 구축 및 자료입력
- ▶국가안전정보통합플랫폼 구축 BPR/ISP 실시
- ▶'19년도 상반기 조사 인력채용(1단계 참여인력 포함) 및 교육

추진 로드맵

'19. 1 ~ 6월
(상반기 조사)

- ▶상반기 조사(19만여개동), 상황관리반 운영
- ▶'18년도 1단계 조사결과 D/B의 현장활용 본격화
- ▶안전관리 우수건물 공개 및 홍보(전용 홈페이지)
- ▶'19년도 하반기조사 인력채용(상반기 참여인력 포함) 및 교육

'19. 6 ~ 12월
(하반기 조사)

- ▶하반기 조사(19만여개동), 상황관리반 운영
- ▶국가안전정보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시범 운영

'20 ~ '21년
(사업완료)

- ▶사업성과 종합평가 보고 및 향후 발전방안 토론회
- ▶대국민 소방안전정보 공개
- ▶국가안전정보통합플랫폼 본격 운영
- ▶146만여개동 소방대응정보조사 및 D/B 입력·업데이트(계속)
- ※ 특정소방관리대상물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체계 마련

결과 활용

● 시설개선

- 관계인에게 점검결과표를 현장에서 교부하여 신속한 개선 유도
- 공식 조사결과는 서면통보 및 홈페이지(마이크로페이지) 이용 무료 컨설팅

● 위법·불량사항 적정조치

- 불량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개선권고, 의법조치로 구분하여 처분
(시설 개선 및 안전도 강화 중점 지도)
- 중대사항은 즉시조치, 개선사항은 **유예기간**을 주어 자발적 개선기회 부여
- 개선 또는 시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은 전문가 무료컨설팅 실시

● 소방현장 활용 DB 구축

- 건축물 동(棟) 단위로 조사,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확산 차단작전 전개를 위한 '건축물 화재안전정보DB' 구축
- '20년 개설 예정인 (가칭) '국가안전정보통합플랫폼'과 연계 활용

결과 활용

● 소방력 보강

- 점검결과를 분석, 관할 소방관서 대응력의 적정성을 평가
⇒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장비보강 및 소방인력 우선 충원 등 조치

● 비상키트 보급

- 특별조사 홍보 및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긴급 안전조치에 필요한 물품 (탈출로 안내표지 등)을 안전관리자에게 보급

● 조사결과 대국민 공개

-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건물에 있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 안전정보 공개

※ 공개방식, 공개범위 설정 및 법적근거 마련은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

2.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계획

조사반 구성 및 참여인력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조사대상(동)	172,543	15,682	12,246	7,425	9,428	8,212	4,086	4,537	770	35,447	7,893	9,001	4,034	8,886	7,147	7,410	12,561	9,608	4,500	3,670	
조사반	합계	798	72	57	34	44	38	19	21	4	165	36	41	19	41	33	34	58	44	21	17
	A반(본부)	57	4	5	3	4	2	1	1	1	21	2	2	1	2	1	1	2	2	1	1
	B반(본부)	24	2	2	0	2	1	1	0	0	7	1	0	1	1	1	1	1	1	1	1
	C반(소방서)	717	66	50	31	38	35	17	20	3	137	33	39	17	38	31	32	55	41	19	15
참여인력	합계	2,755	245	197	121	153	130	70	71	19	574	122	138	65	139	114	118	193	153	74	59
	조사반	2,623	235	190	113	146	122	63	66	15	556	116	132	61	133	108	112	185	146	69	55
	상황관리	65	4	3	5	3	5	5	3	3	4	3	3	3	3	3	3	3	3	3	3
	행정보조	67	6	4	3	4	3	2	2	1	14	3	3	1	3	3	3	5	4	2	1

조사반의 업무범위

- 화재안전에 관한 **정량적·정성적** 제반항목에 대한 조사
-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분야 **화재안전** 관련 위험요인 컨설팅
- 위반사항에 대한 **자발적 시정** 및 보완 유도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건물별 화재위험등급 1차 평가**
- **중대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및 **행정처분** 등

※ 소방특별조사에 대한 특례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제3조)

-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대상은 소방시설법 제4조의 소방특별조사 같음처리
-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에는 긴급한 경우 이외 소방특별조사 생략 가능

조사요원의 자격

- **소방공무원** : (지방)소방교 이상으로 1년 이상 소방특별조사 근무 경력자
- **건축분야 조사** : 건축직 공무원,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업무 경력자
- **경력직** : 전기, 가스·소방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70세 이하)
- **조사보조** : 소방·건축·전기·가스 자격 취득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40세 이하)
 - *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분야별 구분없이 무작위 선발
- **행정보조** : 한글프로그램 등 관련 자격 취득자(40세 이하)

조사요원의 업무범위

- **건축분야 조사** : 방화구획, 피난시설, 방화문, 방화셔터, 마감재 등
 - **소방공무원** : 관계인의 자체안전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이용자 특성 및 화재대응활동 여건 등에 관한 사항 등
 - **전기공사 및 전기경력직** : 전기설비 현황, 전기 차단장치 적정성, 접지, 절연 저항, 전기설비의 안전성, 비상발전설비의 적정성 등
 - **가스·소방 경력직** : 가스 저장설비 등의 배치기준 및 사고예방설비 기준의 적정성 등
 - **조사보조**
 - 조사일정 확인·조정, 건축물 현황 파악 등의 공통업무 수행
 - 조사반장의 지시에 따른 분야별 조사업무 보조
- * A반 : 소방분야 조사 / B반 : 가스분야 / C반 : 전기 또는 가스분야

조사반장의 업무

- 해당 조사반의 조사대상물에 대한 책임관리 등 **총괄 운영**
- **조사반원**에 대한 복무관리 및 평가
- 조사반원의 **임무 분담 확인 및 조정**
- 대상별 **조사 착안사항 및 청렴의무** 등에 대한 교육
- 조사 **추진일정 및 실적 보고 총괄**
- 특별조사결과서 현장 교부 등

조사방법 등

- **조사기준** : 체크리스트 활용 조사 (태블릿 PC 점검 앱에 탑재)
 - * 태블릿 PC 조사결과를 서버로 즉시 전송(금년도 통신요금은 시·도 자체 예산활용)
- **사전통지** : 조사 실시 7일 전까지 조사내용 및 일정
- **조사방법** : 조사반(3~5명)이 한팀으로 조사(대상별 개별조사 불가)
 - * A·B반(81개)은 승합차, C반(717개)은 승용차 임차(130대는 소방서 자체 차량 이용)
 - * 조사반별 점검장비 소방청 일괄구매 후 배부
- **비상키트 보급** : 5종(15,000원 상당) 조사대상별 지급
- **조사결과보고**
 - 특별조사결과서 작성 후 부분(副本) 현장에서 교부
 - 시·도 화재안전특별조사 상황관리반과 소방관서장 보고
 - 시·도 상황관리반에서는 매월 소방청으로 종합결과 보고

위법사항 조치

- **기본원칙** : 자발적 개선 및 보완기회 부여(20일 이내 / 필요시 10일 연장)
-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라 **조치명령**

중대위반 사유 예시

- ▶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 비상구 등을 완전폐쇄하여 즉시 개방이 불가능한 경우
 - ▶ 전년도 소방교육훈련 미실시 등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 ▶ 방화구획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으로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마비된 경우 등
- **결과확인** : 개선·보완 관련 사진을 이메일 또는 모바일 전송(조사반장)

특별조사 및 운영인력 교육

- **(추진방향)** 청년인력(조사 및 행정보조), 경력직(전문경력), 재직자(공무원 등)로 구분하고, 과정별 교육기간에 따라 커리큘럼 편성
- **(교육인원)** 4개 과정 2,755명
 - 청년인력 : 조사보조 892명(4주 / 11개반), 행정보조 67명(1주 / 1개반)
 - 전문인력 : 경력직 102명(1주 / 2개반), 재직자 1,694명(2일 / 11개반)

청년인력		전문인력	
조사보조(892명)	행정보조(67명)	경력직(102명)	재직자(1,694명)
6.11. ~ 7.6. (4주 합숙 / 1주 현장실습)	7.2. ~ 7.6. (1주 합숙)	7.2. ~ 7.6. (1주 합숙)	7.2. ~ 7.5. * 기간중 2일(비합숙)
상록리조트(천안) KT 인재개발원(대전) 재능교육연수원(천안)	상록리조트	상록리조트	- 6개 소방학교 - 경기인재개발원 - 제주소방교육대
조사 보조인력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지식 및 소양 습득	조사일정 조정 및 데이터 관리 요령, 조사결과 정리방법 등 행정보조실무	소방·전기·가스 등 조사관련 법령·기준, 장비 사용법 등 실무점검 교육	팀리더(조사 전문인력)로서의 기본소양·지식 및 중점추진방향 등

점검장비 및 조사차량

➤ **점검장비** : 연기감지기시험기 등 20종 17,272점 (약 53억원)

※ 조사규모에 따라 조사반별 장비 차등 편성, 소방청 일괄구매 후 시·도 배부

연 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품 명	휴대용랜턴	무선송수신기	태블릿 PC	휴대용공구방	헤드결합렌치	줄자	공구세트	기동관누설시험기	열연기감지기시험기	방수압축정기	레이저거리측정기	풍속압계	폐쇄력측정기	조도계	음량계	누설류계	디지털가능계측기	가스검지기	적외열상카메라	안전복 (조끼)	
총 수량	1,653	1,653	798	798	798	798	798	57	798	798	798	57	57	798	798	798	798	798	798	2,643	
수량 (1개반 기준)	A반	3	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5
	B반	2	2	1	1	1	1	1	0	1	1	0	0	1	1	1	1	1	1	1	4
	C반	2	2	1	1	1	1	1	0	1	1	0	0	1	1	1	1	1	1	1	3

➤ **조사차량** : 총 668대 임차(약 16억원) / 승합차 81대(A·B조), 승용차 587대(C조)

※ 총 798개 조사반 중 130개 반은 소방서 행정차량 이용

마이크로페이지(미니홈피) 구축 운영

- (구축기간) 2018. 6. 4 ~ 6. 30(4주간) * 주소 : <http://www.nfa.go.kr/fssc>
- (구성내용) 화재안전특별조사 소개 및 화재안전관리 궁금증 답변
 - 소방청 홈페이지와 연결된 별도의 미니홈피 구성
 - 화재안전특별조사 소개 및 조사대상 관계인도 조사관련 사항 질의
 - 전문가 컨설팅 자문단에서 화재안전관리 관련 컨설팅



시민조사참여단 운영

- ▶ **참여기간** : 2018. 7 ~ 12월 (6개월 간)
- ▶ **운영인력** : 약 800여명 (소방서별 일반참여단 3명 + 피난약자참여단 1명 이내 구성)
 - 일반참여단 3명 중 2명씩(윤번제) 참여
 - 피난약자*참여단은 대상물 특성에 따라 1명 추가 참여

※ '피난약자' :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안전 취약 계층
- ▶ **조사참여** : 소방서별 월 2회씩 12회 참여 (소방서별 1회에 1개소 이상 참여)
- ▶ **주요활동**
 - 조사활동을 관찰, 분석하여 문제점 및 미흡한 점 등 개선의견 제출
 - 지역 화재안전 홍보활동 등 민·관 소통의 창구 역할
 -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의견·아이디어 제시 등
- ▶ **참여수당** : 예산 범위 내에서 1회 참여시 마다 지급

건물 화재안전도 평가

- **(목적)** 국민의 안전시설 선택권 부여 및 건물주의 책임의식과 자발적 개선 유도
- **(평가결과 활용)**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를 전문가(대학교수, 소방기술사 등)가 포함된 전담팀이 평가하고, 5개 등급화하여 그 결과를 온라인 등을 통해 대 국민 공개
- **(평가방법)** 전문평가반을 구성하여 조사결과 우수대상 선정 후 전문평가
 - 화재안전도 전문평가팀 구성 : 1개반 3명(대학교수, 소방·방재관련 기술사 등)
 - * 전문평가팀 : 20개팀 운영(1개팀당 1,750개동 평가 / 1회 70개동 건물 / 25회 운영)
 - 평가대상 :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안전도가 우수한 건물(전체의 약 20%)
 - 평가방법 : 전문평가표에 의한 객관적 평가 및 전문가 주관평가 합산
 - * 필요시 서류평가 후 안전도가 매우 우수한 모범적인 건물은 현장실사 확인

건물 화재안전도 공개

- **(법적근거)** 현행 소방시설법 제5조(조치명령 미이행 시 공개 가능)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공개의 법적근거 마련('18년 하반기 개정·공포)
 - **(공개방법)**
 - (1차) 우수건물 20% 정도를 전문평가하여 화재안전 인증 후 대국민 공개
 - (2차) 안전도 미흡 건물은 주요 사실(주요 안전시설 설치현황, 행정처분 이력, 화재이력 등)만 공개한 후 일정기간 유예, 안전도가 개선되면 평가등급 공개
- ※ 단, 안전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건물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후 유예기간 없이 공개 추진
- **(공개시기)** 2019년 1월 우수건물 대국민 1차 공개

전문가 컨설팅 자문단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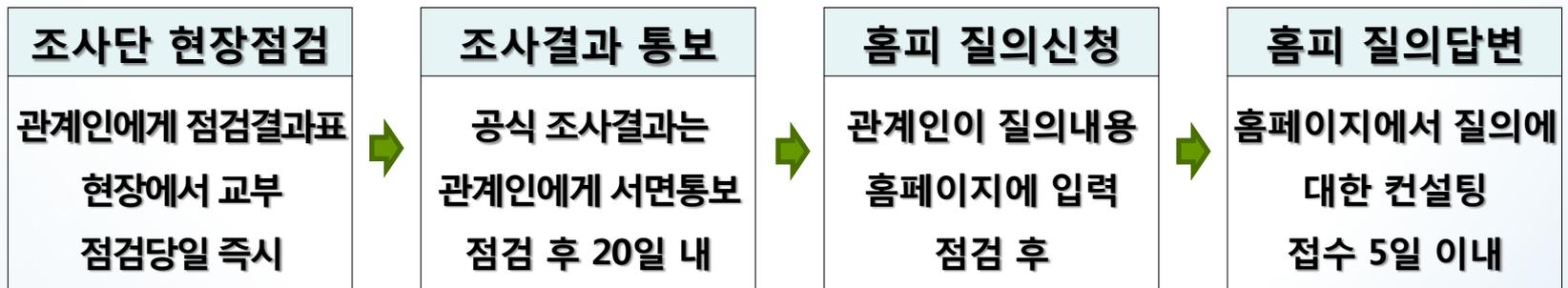
➤ 운영취지

- 건물 관계인의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문의 사항에 대해 마이크로페이지 등을 통해 컨설팅
- 복잡다기한 현장상황으로 인해 조사반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자문 수행

➤ 인력풀 구성 :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 10명 내외 인력풀* 구성

*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 보유 또는 경력 7년 이상, 관련학과 교수 등

➤ 운영방법 : 재택근무, 마이크로페이지(미니홈피)에서 컨설팅 진행



비상키트 구매·보급

- **(방 향)** 건물의 위험특성에 따라 건물당 15,000원 정도의 예산에 맞춰 5개 품목을 구매하되, 현장에서의 활용성 평가를 위해 2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구매·배부 (1차 품목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후 2차 품목 변경 가능)
- **(예 산)** 약 26억원(대상별 15,000원 정도) * 소방청 일괄구매 후 시·도 배부
- **(물품구성)** 긴급피난과 관련된 물품으로 구성
 - * 스티커는 비상구 관리가 소홀한 장소에 직접 부착 (폐쇄 장소, 열어둔 장소, 물건적치 장소 등 구분)
 - * 전자 신호봉 및 미니메가폰은 대상처별 1대씩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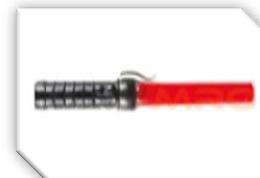
비상구
폐쇄금지
스티커
(10장)



방화문
닫아두기
스티커
(10장)



비상구
물건적치금지
스티커
(1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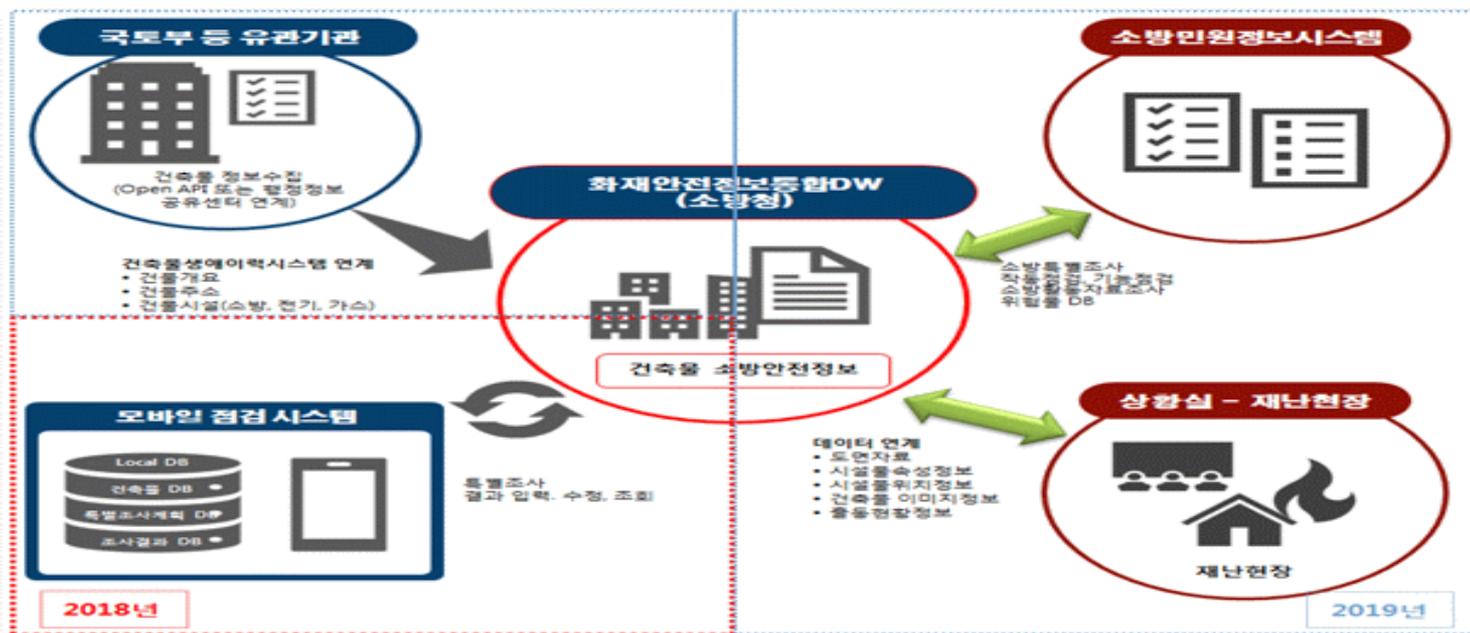
피난유도
전 자
신호봉
(1대)



피난안내
방송용
미니메가폰
(1대)

건물 소방안전정보 통합DB 구축

- **(사업개요)** 모바일 소방점검시스템 및 건축물 안전관리정보, 화재이력정보, 유관기관 데이터 정보, 소방점검 정보 등 데이터 통합연계 및 표준관리체계를 위한 통합데이터웨어하우스(DW), 분석·활용지원시스템('19년) 구축
- **(사업비/기간)** 약 32.7억원 / 2018. 6. ~ 12월(6개월)



PART Ⅲ.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

인건비 지급 기준

▶ 통상임금 및 명절휴가비

- 계약체결일 : 2018.7.2(교육개시일) ~ 2018. 12. 31

구 분		통상임금(월)			명절휴가비 (1회 / 9월)
		합 계	기본급	정액급식비	
경력직 (전기, 가스, 소방)		3,123,000	2,993,000	130,000	600,000
청년	조사보조	1,705,000	1,575,000	130,000	600,000
인력	행정보조	1,705,000	1,575,000	130,000	600,000

▶ 출장여비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 기준 준용 / 관용차량 이용 기준)

- 관외 출장 : 3만원 (본부 소재지 이외의 시·군 조사 시 적용)
- 관내 출장 : 1만원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본부 근무자도 관내 출장비 지급)

▶ 시간외 근무 (18:00 근무 종료 원칙, 부득이한 경우 시간외 근무 수행)

- 지급액 : 경력직 22,410원(1h), 청년인력 12,230원(1h)

*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산식 : 통상임금 ÷ 209시간 × 1.5

교육기간 중 급여지급

- **교육기간 급여** : 2018. 7. 2. ~ 7. 6. (**소방청** 지급 / 교육비 국비 편성)
 - * 합숙교육기간 숙식 제공으로 정액급식비 미지급(기본급만 일할계산 지급)
- **조사기간 급여** : 2018. 7. 7. ~ 12. 31 (**시도별** 지급 / 인건비 지방비 편성)
 - * 정액급식비(130천원) 일할 계산 지급

※ 급여지급 삭감

- 무단 결근, 교육불참 등의 경우는 일급 기준으로 삭감
 - * 예비군 훈련 참석 등 공가의 경우는 급여 비삭감
 - * 1개월 경과 후에는 1개월 근무 시마다 1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연차 활용 (2018년 총 5일 연차 가능 / 연차 미활용 시는 연차수당 연말 지급)
 - * 1일 연차수당은 일급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209시간 x 8시간
- **4대 보험 가입** : 교육개시일 부터 가입

참여인력 표창 등

- **참여인력 표창** : 경력직, 전기공사, 청년 보조인력 등 민간 참여인력
 -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서장 표창 등 수여(2018. 12월 예정)
 - * 소방 및 건축 등 공무원은 2019년 사업종료 시기에 맞춰 별도 추진
- **참여인력 설문조사** : 특별조사 참여자 전원(2,755명) / 9월 중
 - 화재안전특별조사 참여 만족도, 개선사항 등 운영전반('19년 운영에 반영)
 - 모바일 활용, 온라인 설문조사 예정
 - * 합숙교육기간 숙식 제공으로 정액급식비 미지급(기본급만 일할계산 지급)
- **특별조사인력 복무점검**
 - 점검시기 : 소방청 분기 1회, 시·도 월 1회, 소방서 2주 1회
 - 점검내용 :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단정한 복장착용 여부, 청렴·친절도 등
 - 결과활용 : 기간제근로자 계약연장 여부 결정 시 반영(재직자 해당기관 통보)

화재안전 100년 대계 !!
여러분의 땀으로 만들어 집니다

THANK YOU

Q & A